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6 제2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6. 9 (제30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적정 인력 산출\*

Evaluation of the Ideal Personnel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Team Unit of Crimes against Women and Juveniles through  
Job Analysis

임 형 진\*\* · 김 학 신\*\*\* · 민 경 화\*\*\*\*

## 차 례

|             |                    |
|-------------|--------------------|
| I. 서론       | IV. 적정인력 산정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
| III. 연구 방법  |                    |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신설된 경찰서 여성수사팀의 적정인력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찰서 여성수사팀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을 활용하여 적정 인력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찰서 여성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KICS·실종아동등 프파일링 시스템 및 각종 내부보고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경찰서 여성수사 필요인력은 3,272명

으로 2016년 6월 1일 현원인 2,708명은 필요인력에 비해 564명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인원부족은 경미사건 비출동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서 여성수사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사부서와 분쟁 영역에 대한 업무분장의 명확화, 여성수사업무 전문화가 필요하다.

◆ 주제어 : 직무분석, 적정업무량, 여성청소년 수사팀,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 적정 인력

\* 이 글은 치안정책연구소 2016 연구보고서(여성 수사조직 직무진단 및 직무량 분석)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경감

## I. 서론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수사, 아동학대 및 실종사건 처리 등 여성청소년(이하 여청) 업무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견된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에 의한 11세 소녀 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적지 않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sup>1)</sup>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하게 되었다.

여청업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경찰도 성·가정(아동학대)·학교폭력 및 실종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수사체계를 도입하였다. 즉, 2015년 전국 25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이하 여청)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경찰서 여청수사팀 신설 이후 수사체계 구축에만 전념한 나머지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청수사 인력 증원이 여청수사업무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는 경찰서에 신설된 여청수사팀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경찰 실무 발전에 몇 가지 점에서 기여하게 된다. 첫째, 경찰서 여청수사조직 신설 이후 그에 대한 직무분

---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9/201512190172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9/2015121901723.html)(2016. 6. 28 검색)

석 및 적정 인력 산출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객관적·표준화된 직무분석 내용을 토대로 여청수사팀에 대한 적정 인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인력 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청수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청수사 분야의 운영체계 개선 및 수사지원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경찰인력 산정 관련 연구

지금까지 경찰인력 산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sup>2)</sup> 이들 선행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즉, 일부 연구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실제 처리한 업무량과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활용하여 경찰인력을 산정하였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경찰인력 산정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비교적 많이 활용되었다.<sup>3)</sup> 이병철은 경찰인력을 종속변수로, 교통사고 수, 도시 수, 예산, 경찰관서 수, 자동차 대수를 독립

2) 신원부, 경찰 적정인력 배분 모델 개발, 경찰청 용역과제, 2014, 19쪽.

3) 이병철, “한국 경찰 인력 증가요인의 인과성 추론을 위한 회귀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제19권 제2호, 1988; 하태권·김병섭·김영민,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2집, 1996; 이은국,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한미일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1호, 1997; 한국행정연구원, “선진일류경찰을 위한 경찰기능 및 조직진단”, 2008.

변수로 지정한 회귀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수가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sup>4)</sup> 한편, 하태권·김병섭·김영민은 지방경찰청 기능별 인력규모를 종속변수로, 풍속 영업소, 비행청소년, 112신고 건수 등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변수 모두 지방경찰청 기능별 인력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sup>5)</sup>

이은국은 경찰공무원 수(1967~1995)를 종속변수로, 총인구수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경찰공무원의 증가속도가 총인구수의 증가속도에 비해 느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6)</sup>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은 경찰서 기능별 경찰인력수를 종속변수로, 경찰 1인당 관할면적,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등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5대 범죄 검거건수와 급지가 경찰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7)</sup> 신원부는 적정한 경찰인력 산출을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경찰관 적정인력배분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의 모델은 경찰기능이 달라지면 적정인력 산출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경찰기능을 범죄대응기능, 비범죄대응기능, 내부관리기능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인력산정 방법을 달리하였다.<sup>8)</sup>

시스템다이내믹스의 활용은 경찰인력 산출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2011년 (주)SystemixG가 경찰청 인력산정에 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방법으로, 경찰의 적정인력은 123,250명으로 당시 현원보다 23,551명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4) 이병철, 앞의 글, 1988.

5) 하태권·김병섭·김영민, 앞의 글, 1996.

6) 이은국, 앞의 글, 1997.

7) 한국행정연구원, 앞의 글, 2008.

8) 신원부, 앞의 글, 2014.

보여주었다.<sup>9)</sup>

최근에는 경찰인력 산정을 위해 일정기간 처리한 업무량과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정웅은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경찰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적정업무량 기준모델을 개발하여 경찰서 경제팀, 성폭력 전담수사팀,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에 대한 적정인력을 산출하였다.<sup>10)</sup>

선행연구에서 적정한 인력산정을 위해 주로 활용한 위 세 가지 주요 연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이들 장단점은 본 연구에서 여청수사관 적정인력 산정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들 세 가지 연구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 2. 경찰 적정인력 산정 모델

### 1) 적정인력배분 모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인력배분 모델은 신원부가 경찰관 적정인력 산출을 위해 개발한 모델이다.<sup>11)</sup> 적정인력배분 모델에서는 인력산정을 위해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즉, 해당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및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정원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후, 적정인력

9) ㈜SystemixG, 경찰청 최적조직·인력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결과 보고서, 경찰청 용역과제, 2011.

10)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2015.

11) 신원부, 앞의 용역과제, 2014.

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인력을 산출한다.

적정인력배분 모델을 본 연구 목적인 여청수사관 적정인원산출을 위해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여청수사관 = 관서별 추정된 범죄발생건수 ÷ 여청수사관 1인당 연평균 담당건수

여기에서,  
 관서별 추정된 범죄발생건수: 과거 발생범죄를 토대로 추정(회귀분석)  
 여청수사관 1인당 연평균 담당건수: 수사관 1인당 평균효용과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비용이 같은 지점에서의 담당건수

이러한 적정인력배분 모델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장점으로서는 지역별, 관서별 치안수요의 상이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과 비선형적 방식인 시스템다이내믹스에 비해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청수사관 1인당 연평균 담당건수 산정시 수사관 1인당 평균 효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처리한 담당건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2)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모델

시스템다이내믹스는 1960년대 미국의 MIT 경영대학에서 개발된 비선형 형태를 다루는 제어이론으로, 경찰인력산정을 위해 2011년 (주)SystemixG에서 수행한 『경찰청 최적조직·인력구축을 위한 조직진단』연구용역에서 최초로 활용되었다.<sup>12)</sup>

12) (주)SystemixG, 앞의 글, 2011.

시스템다이나믹스를 여청수사관 인력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청 여청 수사 분야 수요 확인 후, OECD 수준 요인 및 경찰청 업무 강도를 반영하여 여청 수사 분야 정원을 확정한다. 이어서 경찰청 정원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산정된 총 정원은 인력 배분 모델을 통해 각 경찰관서별로 배분된다. 즉, 『경찰청 총 정원 예측모델』을 통해 예측된 총 정원은 각 경찰관서별 요인(관내 인구, 면적, 도로 총거리, 산업체 수 등)이 미치는 영향도를 활용하여 산정된 배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때, 각 치안 변수들의 과거 수년간의 데이터 값을 근거로 과거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한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과거 흐름과 가장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치안변수들의 행태를 예측한다.

(주)SystemixG에 의해 수행된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을 여청수사관 적정인력산출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p style="text-align: center;">경찰관서 여청수사조직 적정인력 = 경찰청 여청수사조직 적정인력 × 경찰관서<br/>여청수사조직 필요인력 비율</p> <p>여기에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경찰관서 여청수사조직 필요인력 비율 = 경찰관서 여청수사조직 업무량 ÷<br/>경찰관서 여청수사조직 업무량 합</p> |
|---|

이러한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활용한 적정인력산출 방법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회귀분석모델과 달리 동일직선상 존재(collinearity)로 인한 문제와 피드백관계(autocorrelation)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동태적 역학관계를 파악하여 미래 행태의 변화를 사전예측,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 예측에 활용 가능한 모델이

다.<sup>13)</sup> 한편, 단점으로는 분석결과에 대해 경찰 및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종범죄 급증, 4대 사회악 등 치안수요 및 정책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sup>14)</sup>

### 3)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은 경찰인력 산정을 위해 최근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정웅은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을 활용하여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윈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해당 연구에서 업무유형별 소요시간, 업무담당자의 기본근무시간, 일정기간 내 업무담당자에 의해 처리된 업무유형별 사건수를 계산하여 적정인력을 산정하였다.<sup>15)</sup> 이 모델을 여청수사관 적정인력산출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지방청 필요 여청수사관} &= \text{지방청 연간 여청사건처리 건수} \div \text{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 \\ \text{경찰서 필요 여청수사관} &= \text{경찰서 연간 여청사건처리 건수} \div \text{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 \end{aligned}$$

이러한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장점으로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필요인원을 산정함으로써 쉽게 경찰 내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업무처리 프로세스 변경시 그 내용을 인력 산정에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13) ㈜SystemixG, 앞의 글, 2011, 46-48쪽.

14) 신원부, 앞의 글, 2014, 19쪽.

15) 정웅, 앞의 글, 2013; 정웅, 앞의 글, 2014; 정웅, 앞의 글, 2015.

내부적인 업무량을 통한 필요인력 산출로, 경찰 외부적으로 공감대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데이터

##### 1)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관련 설문조사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여청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이 경찰서(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여청수사관(팀장 및 팀원 포함) 및 서무 담당자를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청수사 업무 및 그 업무의 평균 처리시간, 업무프로세스 등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둘째, 여청수사관들과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경찰서 여청수사팀 업무리스트가 작성되었다. 셋째, 이렇게 작성된 경찰서 여청수사팀 업무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업무유형별 처리시간 관련 설문지(162문항)가 작성되었다.<sup>16)</sup> 넷째, 이렇게 작성된 설문은 전국의 경찰서 여청수사관들 중 일부에게 배포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관 2,708명중 26%에 해당하는 704명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다섯째, 응답된 설문은 SPSS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설문지에 선택형으로 주어진 응답내용은 구체적인 시간으로 변환

16) 심층면접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 정확한 업무처리시간 대신 일정한 시간 구간을 주는 것이 설문대상자들이 질문에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작성시 정확한 업무처리시간을 묻는 단답식 문항 대신 일정한 구간의 시간을 제시한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되었다. 이때 해당 구간의 중간 값이 구체적인 시간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성폭력(13세 미만)에 관한 처리 시간을 묻는 아래 예시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②번(1시간~2시간)으로 답하였다면 1시간 30분(1시간과 2시간의 중간값)이 그 구체적인 시간이 된다. 만약 응답자가 ⑦번으로 답하였다면, 7시간(6시간 + 각 구간사이의 중간 값인 1시간)이 그 구체적인 시간이 된다.<sup>17)</sup>

〈아동성폭력(13세 미만) - 초동조치〉

1. 현장출동(왕복)을 위한 사건당 평균 소요 시간은?

- ① 1시간 이내 ( )    ② 1시간 ~ 2시간 ( )    ③ 2시간 ~ 3시간 ( )  
 ④ 3시간 ~ 4시간 ( )    ⑤ 4시간 ~ 5시간 ( )    ⑥ 5시간 ~ 6시간 ( )  
 ⑦ 6시간 초과 ( )

〈표 1〉은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여청수사관들이 30대, 40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경찰경력 10년 미만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으며, 수사경력은 5년 미만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약 95%의 수사관이 5년 미만의 여청수사경력을 갖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는 경장, 경사, 경위 계급이었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17) ⑦번 응답자에게 각 구간의 절반을 초과한 시간을 더하여 구체적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과대평가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간의 절반을 더하는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징<sup>18)</sup>

| 성 별    |             | 연 령(만) |             | 경찰경력(만) |             | 수사경력(만) |             |
|--------|-------------|--------|-------------|---------|-------------|---------|-------------|
| 남 성    | 525 (81.8%) | 20-29세 | 70 (9.9%)   | 5년 미만   | 159 (22.6%) | 5년 미만   | 394 (56.0%) |
| 여 성    | 127 (18.1%) | 30-39세 | 323 (45.9%) | 5-9년    | 170 (24.1%) | 5-9년    | 109 (15.5%) |
| 총 계    | 703 (100%)  | 40-49세 | 259 (36.8%) | 10-14년  | 125 (17.8%) | 10-14년  | 105 (14.9%) |
|        |             | 40-59세 | 51 (7.2%)   | 15-19년  | 117 (16.6%) | 15-19년  | 71 (10.1%)  |
|        |             | 60세 이상 | 1 (0.1%)    | 20년 이상  | 133 (18.9%) | 20년 이상  | 25 (3.6%)   |
|        |             | 총 계    | 704 (100%)  | 총 계     | 704 (100%)  | 총 계     | 704 (100%)  |
| 여청수사경력 |             | 계 급    |             | 학 력     |             |         |             |
| 5년 미만  | 667 (94.9%) | 순 경    | 60 (8.5%)   | 중 졸     | 1 (0.1%)    |         |             |
| 5-9년   | 27 (3.8%)   | 경 장    | 191 (27.1%) | 고 졸     | 158 (22.5%) |         |             |
| 10-14년 | 6 (0.9%)    | 경 사    | 251 (35.7%) | 전문대졸    | 89 (12.7%)  |         |             |
| 15-19년 | 1 (0.1%)    | 경 위    | 189 (26.8%) | 대 졸     | 448 (63.7%) |         |             |
| 20년 이상 | 2 (0.3%)    | 경감 이상  | 13 (1.8%)   | 대학원 이상  | 7 (1.0%)    |         |             |
| 총 계    | 703 (100%)  | 총 계    | 704 (100%)  | 총 계     | 703 (100%)  |         |             |

## 2) KICS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및 각종 내부보고 자료

여청수사관들이 처리한 유형별 업무 건수를 산정하기 위해 KICS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자료와 각종 내부보고 자료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경찰서에서 연구대상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8) 성별, 여청수사경력, 학력 항목에 대해서는 경찰서 여청수사팀 응답자 70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코딩 오류가 발생하여 703명에 대해서만 통계처리 되었다.

31일까지 처리한 성폭행 사건의 초동조치중 현장조사 처리건수를 확인하기 위해, KICS상 발생통계를 활용하였다. 한편, 경찰서 실종·가출인수색·발견의 시스템 입력 등 기록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건수 산정을 위해서는 프로파일링 접수통계가 활용되었다. 또한, 경찰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대한 처리건수 산정을 위해 경찰청 내부보고 자료인 『현장출동 월보』가 활용되었다. 여청수사관들의 평균기본근무시간은 각 지방청 및 경찰서 내부보고를 통해 이루어진 자료(경찰청 취합)를 활용하여 산정되었다.

## 2. 분석 방법

본 연구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다양한 인력산정 모델 중 어떤 모델에 따라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들과 협의 후,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경찰서 여청수사팀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 그리고 실종사건 처리 등 여청 수사활동에서 나타나는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가장 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적정업무량 기준 모델은 외부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찰 내부 공감대 형성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정업무량 기준모델의 적용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여청수사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이 계산되었다. 둘째, 연구

대상기간 동안 여청수사관들이 처리한 업무유형별 사건수가 산정되었다. 셋째,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이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활용하여 여청수사관 적정인력이 산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청수사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여청수사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은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설문대상자들의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여청수사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overline{H}_i = \sum \overline{I}_i \div N$$

여기에서,

$i$  : 업무유형 [예: 성폭력(112등 신고접수), 성폭력(목격자 등 탐문)]

$\overline{H}_i$  : 업무유형  $i$ 에 대한 평균처리시간

$\overline{I}_i$  : 설문 대상 여청수사관 개인별 업무유형  $i$ 에 대한 평균처리시간

$N$  : 설문 대상 여청수사관 인원수

### 2) 여청수사 사건처리 현황

연구기간동안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실제 사건처리 현황이 정리되었다.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5개월간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수가 산정되었다.

### 3)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은 경찰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간동안 경찰서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이 계산되었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L_{p5} = \left[ \sum (L_{qm} \times N_q \times 5) \right] \div N_p$$

여기에서,

$L_{p5}$  : 연구대상기간(2016. 1. 1 ~ 2016. 5. 31)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

$L_{qm}$  : q 경찰서 여청수사관 1인당 월 기본근무시간

$N_q$  : q 경찰서 여청수사관 인원수

$N_p$  :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관 인원수

### 4) 여청수사관 적정인력 산정

여청수사관 적정인력 산정을 위해 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얻어진 여청수사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연구대상기간 동안 여청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수, 연구대상기간 동안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 산정 결과가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N_{pI} = \sum \sum (C_{qi} \times \overline{H}_i) \div L_{p5}$$

여기에서,

$N_{pI}$  :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관 적정 인력

$C_{qi}$  : 연구대상기간 모든 경찰서에서 처리한 유형별 사건 수

$\overline{H}_i$  : 업무유형  $i$ 에 대한 평균처리시간

$L_{p5}$  : 연구대상기간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

## IV. 적정인력 산정

### 1.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여청수사관들의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과 연구대상기간 총 처리시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은 여청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되었으며, 총 처리시간은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에 KICS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얻은 업무유형별 사건처리건수를 곱하여 산정되었다.<sup>19)</sup>

#### 1) 수사업무

##### (1) 성폭력(강간)

〈표 2〉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약칭 여청수사팀)의 성폭력(강간)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19) 여기에서 사건처리건수는 실제 사건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강간)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의 처리건수는 4,980건이다. 실제 사건수는 2,490건이었으나 현장에 2명의 여청수사관이 출동하므로 사건수에 2를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5,915,614.64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2〉 성폭력(강간)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br>조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90.30     | 449694.00  |
|            | 현장조사                 | 416.42    | 1497029.90 |
|            | 피해자 보호조치             | 386.37    | 448830.71  |
| 수사<br>(일반) | 피해자조사                | 192.27    | 345509.19  |
|            | 추적수사<br>(피의자 불특정 사건) | 1661.93   | 1033438.50 |
|            | 피의자조사                | 192.39    | 389204.97  |
|            | 구속절차                 | 596.34    | 423259.65  |
|            | 수사서류작성               | 378.07    | 679391.79  |
|            | 기 타                  | 184.82    | 332121.54  |
| 수사<br>(특수) | 특수절차                 | 903.26    | 317134.39  |
| 합 계        |                      |           | 5915614.64 |

## (2) 성폭력(강제추행)

〈표 3〉은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13,611,413.73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3〉 성폭력(강제추행)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 조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107.56    | 1293946.80  |
|         | 현장조사                 | 455.97    | 3960555.42  |
|         | 피해자 보호조치             | 405.42    | 1142530.70  |
| 수사 (일반) | 피해자조사                | 202.83    | 880890.69   |
|         | 추적수사<br>(피의자 불특정 사건) | 1570.39   | 2043609.40  |
|         | 피의자조사                | 202.84    | 872009.16   |
|         | 구속절차                 | 585.6     | 150504.48   |
|         | 수사서류작성               | 375.96    | 1632794.28  |
|         | 기 타                  | 188.58    | 819002.94   |
| 수사 (특수) | 특수절차                 | 930.94    | 815569.86   |
| 합 계     |                      |           | 13611413.73 |

### (3)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표 4〉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 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2,432,485.26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4〉 성폭력(카메라 등)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 조치 | 신고접수  | 102.70    | 122521.10 |
|       | 현장조사  | 254.83    | 608024.38 |
| 수사    | 피해자조사 | 205.31    | 244934.83 |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일반)       | 추적수사<br>(피의자 불특정 사건) | 1546.88   | 482042.06  |
|            | 피의자조사                | 198.82    | 204784.60  |
|            | 구속절차                 | 589.64    | 46585.35   |
|            | 수사서류작성               | 380.97    | 454497.21  |
|            | 기 타                  | 187.93    | 224200.49  |
| 수사<br>(특수) | 특수절차                 | 282.36    | 44895.24   |
| 합 계        |                      |           | 2432485.26 |

(4) 성폭력(통신매체 이용 음란)

〈표 5〉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성폭력(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 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713,312.51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5〉 성폭력(통신매체)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br>조치   | 신고접수                 | 99.63     | 33874.20  |
|            | 현장조사                 | 247.81    | 168510.80 |
| 수사<br>(일반) | 피해자조사                | 206.25    | 70125.00  |
|            | 추적수사<br>(피의자 불특정 사건) | 1538.95   | 160595.43 |
|            | 피의자조사                | 201.99    | 70090.53  |
|            | 구속절차                 | 581.26    | 5103.90   |
|            | 수사서류작성               | 379.72    | 129104.80 |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 기 타  | 187.67    | 63807.80  |
| 수사<br>(특수) | 특수절차 | 268.89    | 12100.05  |
| 합 계        |      |           | 713312.51 |

(5) 성폭력(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표 6〉은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성폭력(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347,705.88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6〉 성폭력(공공장소)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br>조치   | 신고접수                 | 101.84    | 14766.80  |
|            | 현장조사                 | 436.56    | 126602.40 |
| 수사<br>(일반) | 피해자조사                | 202.75    | 29398.75  |
|            | 추적수사<br>(피의자 불특정 사건) | 1553.20   | 63288.54  |
|            | 피의자조사                | 204.03    | 27340.02  |
|            | 구속절차                 | 579.58    | 3059.07   |
|            | 수사서류작성               | 383.86    | 55659.70  |
|            | 기 타                  | 190.28    | 27590.60  |
| 합 계        |                      |           | 347705.88 |

(6) 가정폭력

〈표 7〉은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34,339,741.55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7〉 가정폭력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br>조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104.31    | 9349931.16  |
|            | 현장조사        | 117.44    | 4360547.20  |
|            | 피해자 보호조치    | 194.15    | 2324557.95  |
| 수사<br>(일반) | 피해자조사       | 148.55    | 2755751.05  |
|            | 피의자조사       | 166.19    | 3581560.69  |
|            | 구속절차        | 563.57    | 230005.95   |
|            | 수사서류작성      | 351.04    | 6517057.60  |
|            | 기 타         | 171.71    | 3187796.15  |
| 수사<br>(특수) | 특수절차        | 254.02    | 2032533.80  |
| 합 계        |             |           | 34339741.55 |

(7) 소년범(학교폭력)

〈표 8〉은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소년범(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9,238,738.51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8〉 소년범(학교폭력)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br>조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99.93     | 518836.56  |
|            | 현장조사        | 381.99    | 3793924.68 |
| 수사<br>(일반) | 피해자조사       | 149.40    | 741920.40  |
|            | 피의자조사       | 172.59    | 857081.94  |
|            | 구속절차        | 562.62    | 33655.24   |
|            | 수사서류작성      | 345.92    | 1717838.72 |
|            | 기 타         | 172.76    | 857926.16  |
| 수사<br>(특수) | 특수절차        | 114.03    | 552931.47  |
|            |             | 135.94    | 164623.34  |
| 합 계        |             |           | 9238738.51 |

#### (8) 소년범(학교폭력 외 일반 소년범)

〈표 9〉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소년범(학교폭력 외 일반 소년범)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7,861,434.57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9〉 소년범(일반)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 조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96.68     | 129164.48  |
|         | 현장조사              | 370.67    | 947432.52  |
| 수사 (일반) | 피해자조사             | 152.14    | 194434.92  |
|         | 추적수사 (피의자 불특정 사건) | 1352.56   | 4535819.65 |
|         | 피의자조사             | 176.71    | 225835.38  |
|         | 구속절차              | 558.15    | 16702.33   |
|         | 수사서류작성            | 353.43    | 451683.54  |
|         | 기 타               | 167.24    | 213732.72  |
| 수사(특수)  | 특수절차              | 241.06    | 1146629.03 |
| 합 계     |                   |           | 7861434.57 |

(9) 아동학대(가정 내 학대)

〈표 10〉은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아동학대(가정 내 학대)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1,834,730.03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10〉 아동학대(가정)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 조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113.44    | 528290.08 |
|       | 현장조사        | 237.19    | 323527.16 |
|       | 피해자 보호조치    | 213.50    | 127032.50 |
| 수사    | 피해자조사       | 231.90    | 158155.80 |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일반)   | 피의자조사  | 180.68    | 135690.68  |
|        | 구속절차   | 566.72    | 38831.13   |
|        | 수사서류작성 | 367.84    | 250866.88  |
|        | 기 타    | 176.34    | 120263.88  |
| 수사(특수) | 특수절차   | 208.89    | 152071.92  |
| 합 계    |        |           | 1834730.03 |

(10) 아동학대(집단시설 내 학대)

〈표 11〉은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아동학대(집단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 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548,545.77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11〉 아동학대(집단시설)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초동 조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115.53    | 132743.97 |
|         | 현장조사        | 264.55    | 89153.35  |
|         | 피해자 보호조치    | 196.28    | 28853.16  |
| 수사 (일반) | 피해자조사       | 230.45    | 38715.60  |
|         | 피의자조사       | 190.57    | 35255.45  |
|         | 구속절차        | 579.15    | 9763.56   |
|         | 수사서류작성      | 380.11    | 63858.48  |
|         | 기 타         | 182.64    | 30683.52  |
| 수사(특수)  | 특수절차        | 696.22    | 119518.68 |
| 합 계     |             |           | 548545.77 |

(11) 실종·가출인 수색·발견

〈표 12〉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실종·가출인 수색·발견 사건에 대한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79,751,381.24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12〉 실종가출인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중분류                                   | 소분류            |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접수                                    |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 121.66    | 14156114.28 |
| 수색                                    | 초동조치           |                   | 126.98    | 14775138.84 |
|                                       | 정보검색 및 위치추적    |                   | 95.67     | 5565984.93  |
|                                       | 수색             |                   | 285.02    | 18207077.60 |
|                                       | 타서 공조수사        |                   | 232.33    | 4730703.46  |
| 사후조치                                  | 시스템 입력 등 기록 관리 |                   | 102.83    | 4442050.34  |
|                                       | 신고자 통보         |                   | 84.33     | 3642887.34  |
| 장기 실종<br>추적·수사<br>(48시간<br>이상<br>미발견) | 미발견자 관리        | 실종아동등<br>(1개월 이내) | 570.31    | 11332059.70 |
|                                       |                | 실종아동등<br>(1개월 이후) | 590.20    | 135746.00   |
|                                       |                | 가출인               | 596.25    | 2763618.75  |
| 합계                                    |                |                   |           | 79751381.24 |

(12)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표 13〉은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업무 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45,085,639.21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13〉 성범죄자 관리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종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관리·<br>점검 | 관리대상자 연락 및 점검    | 61.96     | 12570135.00 |
|           | 의무고지             | 50.82     | 185696.28   |
|           | 제출서류 진위확인        | 83.22     | 3980412.60  |
|           | 대상자 면담           | 94.43     | 4516586.90  |
|           | 실제거주지 확인         | 187.67    | 8976256.10  |
|           | 직장 확인            | 177.10    | 8470693.00  |
|           | 자료 송부            | 89.11     | 4262131.30  |
|           | 사진촬영             | 78.96     | 1037692.32  |
| 수사        | 소재불명자 소재파악       | 256.19    | 492397.18   |
|           | 사건처리<br>(서류작성 등) | 418.64    | 402313.04   |
|           | 피의자 조사           | 199.09    | 191325.49   |
| 합 계       |                  |           | 45085639.21 |

## 2) 수사 외 업무

〈표 14〉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수사 외 업무에 대한 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 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3,049,963.35분으로 산정되었다.

〈표 14〉 수사 외 업무 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성폭력 | 상설모니터단 | 장애학생 보호     | 324,58    | 436560.10  |
| 실종  | 실종자 발견 |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 562,40    | 2440816.00 |
| 성폭력 | 피해자 보호 | 콜백시스템       | 32,35     | 172587.25  |
| 합 계 |        |             |           | 3049963.35 |

## 3) 내사사건

〈표 15〉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내사사건에 대한 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유형별 총 처리시간을 보여준다.<sup>20)</sup>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6,389,223.03분으로 산정되었다.

20) 여청수사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내사사건 처리시간은 해당 수사사건 처리시간의 약 1/2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내사사건의 경우, 초동조치(현장출동, 피해자 보호조치), 피의자 검거활동 및 구속수사, 수사서류 작성 등의 업무에 있어 수사사건보다 업무량이 대폭 줄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사사건 처리시간에 대해 수사사건 처리시간의 1/2을 적용하였다.

〈표 15〉 내사사건 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 구 분             | 평균처리시간(분) | 총 처리시간(분)         |
|-----------------|-----------|-------------------|
| 성폭력(강간)         | 2501.09   | 335146.06         |
| 성폭력(강제추행)       | 2513.05   | 610671.15         |
| 성폭력(카메라이용촬영)    | 1874.72   | 127480.96         |
| 성폭력(통신매체이용음란)   | 1856.09   | 64963.15          |
| 성폭력(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826.05   | 21912.60          |
| 가정폭력            | 1035.49   | 1217736.24        |
| 소년법(학교폭력)       | 1067.59   | 174017.17         |
| 소년법(일반 소년법)     | 1734.32   | 3529341.20        |
| 아동학대(가정 내 학대)   | 1148.25   | 210129.75         |
| 아동학대(집단시설 내 학대) | 1417.75   | 97824.75          |
| <b>합 계</b>      |           | <b>6389223.03</b> |

## 2. 기본근무시간 산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청수사관들의 평균 기본근무시간은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지방청별 여청수사관 현원 및 월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1일 현재 전국 251개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현원은 2,708명이며, 그들의 1개월간 총 근무시간은 659,745.50 시간이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 1인당 평균 기본근무시간을 산정하면  $1,218.14 (=659,745.5 \times 5 \div 2,708)$  시간이 됨을 알 수 있다.

### 3. 경찰서 여청수사관 적정인력 산정

연구대상기간인 동안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들의 총 사건처리시간은 211,119,929.28분이 된다.<sup>21)</sup>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대상기간 경찰서 여청수사팀 평균 기본근무시간은 1,218.14시간이었다. 이를 활용하여 경찰서 여청수사팀 적정인력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11,119,929.28\text{분}/(1,218.14\times 60)\text{분}=2,888.56(\text{명})$$

그런데, 이 산정에서는 여청수사관의 휴가, 교육 등 업무손실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업무손실을 정웅과 마찬가지로 13.3%로 보면 최종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적정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sup>22)</sup>

$$211,119,929.28\times(1+0.133)\text{분}/(1,218.14\times 60)\text{분} = 3,272.73(\text{명})$$

## V.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경찰서 여청수사조직에 대한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산정, 그리고 여청

21) 총 사건처리시간 산정은 『IV.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에서 제시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즉, 경찰서 여청수사팀 업무유형별 평균처리시간 및 총 처리시간 관련 표들의 우측 하단에 적용된 합계를 모두 합하여 계산되었다.

22) 정웅은 관악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휴가, 교육으로 인한 업무손실을 13.3%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가 정웅 연구와 유사하게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업무량 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정웅이 제시한 업무손실 추정치 13.3%를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였다(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124쪽).

수사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는 내용을 토대로 여청수사조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도 다른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 1. 정책적 제언

### 1) 각 경찰서 여청수사관 적정 인력 산정 모델

본 연구는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관 적정인력 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모델을 제시하고, 적정인력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1개 경찰서 여청수사관의 적정인력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그대로 1개 경찰서에 적용하면 해당 경찰서의 적정인력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합리적인 업무손실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업무프로세스 개선

매뉴얼 상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여청수사관이 현장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심층면접에 임한 대다수 여청수사관들은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인력 낭비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도 경찰서 여청수사팀 필요인력은 3,272.73명이나 2016년 6월 1일 현원은 2,708명으로 필요인력에 비해 564.73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찰서 여청수사관들의 업무량 감소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청수사관들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여청수사업무 프로세스상 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비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지역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조사한 상태이고,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될 염려가 없으므로 여청수사관들의 긴급한 현장출동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종·가출인 사건에 있어서 범죄의심·위험성 없는 성인 가출에 대해서는 출동·수색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종·가출인 사건중 소재·위치가 특정된 자살 기도(소동)에 대해서도 여청수사팀의 현장출동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는 실종·가출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지역경찰이 이미 현장에 나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경찰이 경찰서 생활질서계(보호조치 담당) 및 119와 협조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설모니터단, 보호시설 일제수색, 성폭력피해자 콜백시스템 등 수사 외 업무는 여성청소년계로 이관함으로써, 여청수사팀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여청수사업무에만 종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표 16〉은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감축했을 때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업무량이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보여준다.<sup>23)</sup>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사건의 많은 경우가 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비출동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하면 연구대상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가정폭력 출동을 위해 소요된 전체시간 9,349,931.16분의 41.4%에 해당하는 3,870,871.50분의 업무 감축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는 동기간 전체 업무시간 211,119,929.28분의 1.83%에 해당하는 업무의 감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한 모든 업무가 감축된다면 전체 업무시간 대비

23) 〈표 16〉에서 업무량 경감 요소에 대한 해당 업무 비율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했다.

8.6%의 업무 감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앞서 산정한 바와 같이,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필요인력은 최종 3,272.73명인 바, 경찰서 여청수사팀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되면 281.45명의 인력 증원 효과를 갖게 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272.73(\text{명}) \times 0.086 = 281.45(\text{명})$$

〈표 16〉 경찰서 여청수사팀 감축 가능한 업무 및 전체업무대비 감축률

| 분야         | 업무량 경감 요소                      | 총 처리시간 (분)  | 해당 업무 비율 | 감축 업무량 (분) | 전체 업무 대비    |
|------------|--------------------------------|-------------|----------|------------|-------------|
| 가정 폭력      | 경미사건 비출동                       | 9349931.16  | 41.4%    | 3870871.50 | 1.83%       |
| 실종 기출      | 범죄의심·위험성 없는 성인 기출 (자발적, 상습) 출동 | 14156114.28 | 19.0%    | 2689661.71 | 1.27%       |
|            | 범죄의심·위험성 없는 성인 기출 (자발적, 상습) 수색 | 43278904.83 | 19.0%    | 8222991.91 | 3.89%       |
|            | 소재·위치 특정된 자살 기도(소동)            | 14156114.28 | 2.4%     | 339746.74  | 0.16%       |
| 수사 외 업무    | 상설모니터단                         | 436560.10   | 100%     | 436560.10  | 0.21%       |
|            | 보호시설 일제수색                      | 2440816.00  | 100%     | 2440816.00 | 1.16%       |
|            | 성폭력피해자 콜백시스템                   | 172587.25   | 100%     | 172587.25  | 0.08%       |
| <b>총 계</b> |                                |             |          |            | <b>8.6%</b> |

### 3) 경찰서 여청수사팀 인력 증원 필요

이미 언급한대로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필요인력은 최종 3,272.73명이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1일 현재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은 2,708명이었다. 따라서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필요인력에 비해 현원이 564.73명이 부족하여,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의 인력부족 문제는 앞서 제안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반영한 후, 증원 필요인력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3,272.73(\text{명}) \times (1-0.086) = 2,991.28(\text{명})$$

따라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반영하면 2016년 6월 1일자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현원 2,708명은 필요인력에 비해 283.28명 부족하게 된다.

### 4) 다른 수사부서와 분쟁영역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

여청수사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타 기능과의 업무영역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동거인 간 폭력의 경우, 형사기능에서는 가능하면 사실혼으로 판단하여 여청기능에서 가정폭력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처리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수사절차가 달라지므로, 동거인 간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요구된다. 여청수사조직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타 수사기능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여청수사조직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해당 기능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5) 여청수사업무 전문화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여청수사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며, 전문화는 여청수사조직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여청수사관은 수사경력 및 여청수사경력이 다소 부족하다.<sup>24)</sup> 수사경력 5년 미만자가 50% 이상이며 여청수사경력 5년 미만자가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여청수사조직의 비전문화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자원 유입과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무개선을 위해, 여청수사관 사건수사비 증액, 수사차량 추가 지원, 수사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가능한 휴대폰 추가 지원, 사무실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여청수사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여청수사관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한계

### 1) 설문조사의 한계

본 연구에서 유형별 업무처리시간 산정을 위해 여청수사관 일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설문대상 여청수사관이 여청수사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냐의 문

24) 이는 설문대상자에 대한 통계에 기초한 판단이므로 전체 여청수사관을 대상으로 한다면 내용이 다소 다를 지도 모른다.

제이다.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나 무작위샘플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전국 모든 경찰서 여청수사관이 참여하되, 편의상 경찰서 여청수사관중 일부 여청수사관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나 무작위샘플링은 아닐지라도 경찰서 여청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전국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였고, 설문대상자들을 지정함에 있어 패턴을 갖고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샘플링에 가까워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설문에 대해 대상자들이 사실대로 응답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설문조사에서의 응답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 첫장에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응답』을 구한다는 안내 문구를 넣었고, 또한 응답자가 쉽게 답할 수 있도록 매 설문문항마다 일정한 구간을 가진 선택 항목을 제시했으며, 대상자들의 과대평가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선택된 응답내용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변환시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과거 업무량 산출의 한계

본 연구는 여청수사관이 과거 5개월간 처리한 사건을 기준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건처리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대상기간인 5개월 단위로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건이 증가 또는 감소추세일 수 있는 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상 한계로 인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건처리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더욱 정교한 경찰서 여청수사팀 적정인력 산출을 위해 후행 연구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건처리수의 변화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대상기간이 비교적 짧고, 필요인력산정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연구대상기간 다음 시점이므로 그 간격이 크지 않아 두 기간 동안 여성청소년 업무의 추세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조금 자유로울지 모른다.

〈논문 접수 : 2016. 8. 8, 심사 개시 : 2016. 8. 23, 게재 확정 : 2016. 9. 21〉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신원부, 경찰 적정인력 배분 모델 개발, 경찰청 용역과제, 2014.

(주)SystemixG, 경찰청 최적조직·인력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결과 보고서, 경찰청 용역과제, 2011.

한국행정연구원, 선진일류경찰을 위한 경찰기능 및 조직진단, 경찰청 용역과제, 2008.

#### 2. 논문

이병철, “한국 경찰 인력 증가요인의 인과성 추론을 위한 회귀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제19권 2호, 1988.

이은국,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 한미일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1호, 1995.

정 응,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 1호, 2013.  
\_\_\_\_\_,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4.

\_\_\_\_\_,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9권 1호, 2015.

하태권·김병섭·김영민,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2집, 1996.

#### 3. 기타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news.chosun.com> (2016. 6. 28 검색).

< ABSTRACT >

## Evaluation of the Ideal Personnel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Team Unit of Crimes against Women and Juveniles through Job Analysis

Lim, Hyung-Jin · Kim, Hak-Shin · Min, Kyung-Hw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deal number of personnel for police investigation team units of crimes against women and juveniles which had been set up recent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id job analysis of the team units and estimated the ideal personnel by using a model based on the ideal workload. This study used several kinds of data including survey data from 704 police investigators in the team units, KICS data, data from profiling system for lost children, and internal report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ideal number of the team units was 3,272. Therefore, the number of present personnel in June, 2016 — 2,708 — was short by 564 compared to the ideal number. The lack of personnel could be improved by revising work process such as non-deployment in case of non-significant incidents. In addition, the separation of duties between the team units and the other investigation team units should be clarified. Finally, specialization of the team units is necessary for the team to play their role well.

◆ Key Words : Job Analysis, Ideal Workload, Police Investigation Team Unit of Crime against Women and Juvenile, Model Based on Ideal Workload, Ideal Personnel

